

12. 교과학습발달상황



훈령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 ①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별표 9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에 따라 시행한다.
- ② 초등학교 관련 내용으로 생략
- ③ 중학교 관련 내용으로 생략
- ④ 고등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급'을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다음의 교과(목)는 예외로 하여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다.
 1. 보통 교과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 '성취도별 분포비율'
 2. 보통 교과 공통 과목의 '과학탐구실험' 및 전문 교과Ⅱ, Ⅲ: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3. 보통 교과의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과', '과목', '단위수', '성취도'
- ⑤ 중·고등학교의 '비고'란에는 공동교육과정 및 학교 밖 교육 이수, 학적변동으로 인한 이수과목 상이 등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특기사항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 ⑥ 중·고등학교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다만, 체육·예술 교과(군) 및 전문교과Ⅱ의 실무과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다.
 1. 체육·예술 교과(군):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
 2. 전문 교과Ⅱ의 실무과목: 능력단위 기반의 과목별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
 3. < 삭제 >
 4. < 삭제 >
- ⑦ 제6항에 따른 중학교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입력하고, 고등학교는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되 세부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 ⑧ 고등학교의 보통 교과 중 교양 교과는 과목명 및 이수단위를 입력하고 '성취도(수강자수)'란과 '석차등급'란에는 'P'를 각각 입력한다. 다만, 교양 교과를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 시에는 과목명 및 이수단위를 입력하고 '성취도(수강자수)'란과 '성취도별 분포비율'란에는 'P'를 각각 입력한다. 또한,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 교양교과(환경, 보건, 진로와 직업 등) 성격의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경우 과목명 및 이수시간을 입력하고 이수여부에 'P'를 입력한다.
- ⑨ < 삭제 >

⑩ 전문 교과 I 및 보통 교과(공통 과목 과학탐구실험,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는 과목 수강자수가 13명 이하인 경우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하고, ‘석차등급’란에는 ‘석차등급’이나 ‘.’을 입력한다. 다만,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과목이 2과목 이상인 경우에 ‘석차등급’란에 ‘석차등급’ 또는 ‘.’ 표기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동일하게 입력한다.

⑪ < 삭제 >

⑫ 중학교 관련 내용으로 생략

⑬ 중학교 관련 내용으로 생략

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교과담당교사가 입력한다.

⑮ 고등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은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한다.

⑯ 고등학교에서 학교 밖 교육으로 이수한 과목은 ‘교과’, ‘과목’, ‘단위수’를 입력하고, 이외 항목은 모두 ‘.’을 입력한다.

⑰ 학점제를 적용받는 고등학교는 제4항, 제8항, 제10항, 제15항, 제16항의 ‘이수단위’ 또는 ‘단위수’를 ‘학점수’로 본다.

⑱ 중학교 관련 내용으로 생략

❖ 별표 9의 항목 표시 형태는 교육부훈령 제477호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표기상의 통일을 위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표시함.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1. 평가의 목표 및 방침

가. 교과학습의 평가는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또한, 교수·학습과 평가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평소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하여 학생 개개인의 교과별 성취기준·평가기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습 수행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나. 각급 학교는 교과학습의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등을 제고하여,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다.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도교육청의 학업 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교과목의 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한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

라. 다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지필평가 또는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하거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필 및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법적근거

기재요령
안내

목적 등

인적·학적
사항

출결상황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1학년)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2·3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독서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타
사항 등

참고자료

- 마. 교과학습의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별 각 교과(학년)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 바. 동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내용을 준거로 시·도교육청에서는 초·중·고등학교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수립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별 세부적인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한다.
- 사.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내 학교 시험 및 각종 교내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아.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에 부모 교직원이 재직하는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년의 출제, 검토, 인쇄, 채점, 평가 관리 등 자녀와 관련한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자. 부정행위 예방 대책과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 처리 절차 및 처리 기준을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마련하여, 학기 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또한, 부정행위 적발 시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

2. 주요 용어 정의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가. 수행평가란 교과담당교사가 교과 수업시간에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이다.
- 나. 성취기준이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활동의 기준을 의미하며, 학생의 특성·학교 여건 등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여 교과협의회를 통해 재구조화할 수 있다.

3. (초등학교 관련 내용으로 생략)

4. 중학교·고등학교 평가 방법

가. 평가 계획 수립

- 1) 교과학습의 평가 계획은 각 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교·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과(학년) 협의회에서 수립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다만, 중학교 자유학기(학년)에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따라 해당 교과 담당 교사별로 평가 계획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2) 평가 계획에는 각 교과(학년)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평가 영역·요소·방법·횟수·반영 비율·수행평가 세부기준(배점) 등과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을 포함한다.
- 3) 확정된 평가 계획은 정보공시 등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한다. 또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여 평가 실시 전에 재 공지한다.

4) 자유학기의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는 학교별로 자유학기의 취지에 맞는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나. 평가 운영

- 1) 지필평가 문제는 타당도,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 평가의 영역, 내용 등을 포함한 문항정보표 등 출제 계획을 작성하여 활용하며, 동일 교과 담당교사 간 공동 출제를 한다.
- 2) 지필평가는 문항별 배점을 표시하여 가급적 100점 만점으로 출제하고 문항의 수준별 난이도의 배열에 유념한다.
- 3)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지필평가 관련 보안 규정과 시험지 유출 시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문제는 출제·인쇄 및 평가의 전 과정에서 보안이 유지되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 4)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 5) 수행평가의 점수는 점수화가 가능한 영역의 점수만 반영하되, 기본점수의 부여 여부, 부여 점수의 범위 등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의 학업성적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 6)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문항의 이의신청에 따른 오류 검증을 위해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 (중학교 관련 내용으로 생략)

라. 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 결과 처리

- 1)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매 학기말 교과 담당교사가 작성하고, 전산처리할 경우 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과목별 성적 일람표는 지필평가(명칭, 반영비율 등 명기)와 수행평가(영역, 반영비율 등 명기)의 점수를 합산하여 각 호와 같이 성적을 산출한다.
 - 가) 교양교과(군)의 과목 및 나)~마)호를 제외한 모든 과목은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동석차수), 석차등급을 산출한다.
 - 나) 보통 교과와 진로 선택 과목은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 성취도별 분포비율을 산출한다.
 - 다) 보통 교과 공통 과목의 '과학탐구실험'과 전문 교과Ⅱ, Ⅲ은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만 산출하고, 이 중 전문 교과Ⅱ의 실무과목은 능력단위로 산출할 수 있으며, 능력단위 평가 시 이수시간, 원점수, 성취도만 산출한다.
 - 라) 보통 교과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은 성취도만 산출한다.

법적근거

기재요령
안내

목적 등

인적·학적
사항

출결상황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1학년)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2·3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독서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타
사항 등

참고자료

마) 고등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보통 교과 진로 선택 과목,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은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한다.

- 2) 원점수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록하며,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는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하여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기록한다.
- 3) 과목별 성취도는 성취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하되, 기준 성취율에 따른 분할점수를 과목별로 학교가 설정할 수 있다.

성취율	성취도
90% 이상	A
80% 이상 ~ 90% 미만	B
70% 이상 ~ 80% 미만	C
60% 이상 ~ 70% 미만	D
60% 미만	E

단, 보통 교과 공통 과목의 과학탐구 실험, 보통 교과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보통 교과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전문 교과 I 과학 계열 교과(군)의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전문 교과 I 국제계열 교과(군)의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의 성취도는 원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원점수)	성취도
80% 이상 ~ 100%	A
60% 이상 ~ 80% 미만	B
60% 미만	C

- 4) 과목별 석차등급은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의 합계에 의한 석차 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단, 등급별 누적 학생수는 수강자수와 누적 등급비율을 곱한 값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석차등급	석차누적비율
1등급	~ 4%이하
2등급	4%초과 ~ 11%이하
3등급	11%초과 ~ 23%이하
4등급	23%초과 ~ 40%이하
5등급	40%초과 ~ 60%이하
6등급	60%초과 ~ 77%이하
7등급	77%초과 ~ 89%이하
8등급	89%초과 ~ 96%이하
9등급	96%초과 ~ 100%이하

- 5)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동점자 처리 규정을 둘 수 있으며, 가급적 동점자를 발생 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여 등급경계에 있는 경우 중간석차를 적용한 중간석차백분율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하며, 이때 '라'목의 4) 표의 비율은 중간석차백분율로 사용한다.
- 6) 석차는 매 학기별로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가) 성적산출을 위한 수강자수는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수(수강하였으나 이수하지 못한 학생수도 포함)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과별로 학생을 선발한 학교는 교육과정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학과별로 수강자수를 정할 수 있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과정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수강자수를 정할 수 있다.
 - 나)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위탁교과와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포함)의 개인별 평가가 곤란한 전문(공), 실기(습) 교과는 원점수, 과목평균 등을 기록할 수 있고, 성취도 또는 이수여부를 기록한다.
 - 다) 과목별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에게 해당 순위의 최상의 석차를 부여하고 ()안에 동점자 수를 병기한다.
 - 라)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동실습소, 일반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 포함), 특수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포함) 및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 등에서 개설한 교과(과정)를 계열이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수강한 경우의 수강자수는 계열별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 마) '재·전·편입학생'과 '명예졸업, 학업중단 퇴학, 자퇴, 제적, 휴학 및 전출 학생 중 모든 평가가 완료되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학생'은 수강자수에 포함하고,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학기말 최종 성적처리 불가능)의 명예졸업생 및 퇴학, 자퇴, 제적, 휴학'과 '재·전·편입학생 중 원적교에서 성적을 취득해 온 학생'은 수강자수에서 제외한다.
 - 바) 학점제를 적용받는 고등학교에 편성된 국어·수학·영어의 공통과목,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편성된 전문교과II 실무과목은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별도로 설정하고, 운영의 세부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법적근거

기재요령
안내

목적 등

인적·학적
사항

출결상황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1학년)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2·3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독서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타
사항 등

참고자료

- 7) 채점 등 평가 결과를 전산처리할 경우, 교과 담당교사는 전산처리 결과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대조·확인해야 한다.
- 8)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지필 및 수행평가 결과는 학생 본인만 확인하도록 하며, 타인에게 성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9) 성적처리 및 학생 확인이 완료된 지필평가의 학생 답안지는 성적산출의 증빙자료로 5년간 보관한다.
- 10) 수행평가의 결과물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관기간을 결정하여 시행한다.
- 11) 성적처리가 끝난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졸업 후 1년 이상 당해 학교에 보관하며, 상급학교 진학 시 입학전형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전형 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5.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가.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 처리 및 관리, 이에 따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나.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 학교장이 정한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 다. 위원의 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정하며, 교직원 중에서 교무분장 업무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 라.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학업성적관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약간 명의 학부모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마. 위원의 임기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매년 3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로 한다.
- 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 2) 각 교과(학년)협의회에서 제출한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요소·방법·시기·횟수·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 3)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 4)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홍보, 평가결과 후속조치(이의제기 등))
 - 5)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항

- 6)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등을 포함한 정정에 관한 사항
- 7) 고등학교의 교과목별 기준성취율에 따른 분할점수 산출 방식 등에 관한 사항
- 8)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사.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1) 회의는 학기 초 및 심의사항이 발생했을 때 개의회하며, 세부적인 개최 시기 등은 시·도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다.
-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 3)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 결과를 작성하고, 위원들의 확인을 받아 보관한다.

6. 기타

가. 교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처리는 결시 이전·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하되, 인정 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 등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나. 모든 평가(학기말 성적산출 기준)가 완료되기 이전 전출, 휴학, 면제, 유예, 제적, 자퇴, 퇴학 학생이 그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재취학, 전·편입학을 위하여 그 성적을 전산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 재취학, 재·전·편입학생은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 1) 재취학, 재·전·편입학 일자 이전 원적교의 성적과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을 합산한다.
- 2)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원적교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을 인정한다.
- 3) 재취학, 재·전·편입학한 이후 성적 산출을 위한 원적교의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평가의 성적을 반영한다. 다만, 결시 등의 사유로 인정점을 부여해야 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 4) 1)~3)호에서 제시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 5) 원적교에서는 전출학생의 전출시점까지 취득한 성적(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점수 및 상세한 기록 등)을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전입교로 전송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경우 정리하여 비공개로 전입교로 송부하고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법적근거

기재요령
안내

목적 등

인적·학적
사항

출결상황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1학년)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2·3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독서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타
사항 등

참고자료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귀국학생 등'은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 1) 국내 학교에 취학, 재취학, 재·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만으로 성적을 산출한다.
- 2) 재취학, 재·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 학교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재취학, 재·편입학 이후에 취득한 성적과 합산한다.
- 3) 재취학, 재·편입학 후 취득한 성적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이전의 국내학교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재취학, 재·편입학 이후 성적을 인정한다.
- 4) 1)~3)호에서 제시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마.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장애학생의 평가조정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학생이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장애학생의 평가조정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 1)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 시 별도의 평가장 설치·운영, 대독, 대필, 보조기기, 보조인력 등 적절한 평가조정을 지원한다.

가)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학생을 위해 점자 평가자료를 제공하고, 필요 시 음성 평가자료를 지원하며,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한다. 또는 묵자(일반문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학생을 위해 확대독서기(개인지참 가능) 또는 확대/축소 평가자료(118%, 200%, 350% / A4 중 택1)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한다.

나) 지체장애학생 중 뇌병변 장애학생을 위해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하고, 상지 기능 장애로 평가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필을 지원한다.

다)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한 학생을 포함하여 청각장애학생이 듣기평가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지필평가로 대체한다.

- 2) 학생의 장애가 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가적인 평가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시간 연장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해설

1.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가. 글로벌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인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개편하였고, 수준별·맞춤형 교육여건 조성과 함께 모든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을 최대한 발현시켜줄 수 있는 교수·학습과 평가 제도의 확립을 위한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2011.12.13.)에 따라 학업성취의 수준을 평가하는 「성취평가제」가 도입되었다.

- 1) 성취평가제는 ‘학생이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가’라는 평가의 본래적 의미를 강조하는 평가제도이다.
- 2) ‘성취기준’은 각 교과목에서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성취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의 능력과 특성을 진술한 것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의 실질적인 근거로 교사가 무엇을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지, 학생이 무엇을 공부하고 성취해야 하는지에 관한 실질적인 지침이 된다.
- 3) ‘평가기준’은 학습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각 성취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상/중/하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속한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있고, 할 수 있는지를 기술한 것을 의미한다.
- 4) ‘단원/영역별 성취수준’은 각 단원 또는 영역에 해당하는 교수·학습이 끝났을 때 학생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기능, 태도에 도달한 정도를 수준별로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 5) ‘최소 성취수준’은 각 과목의 교수·학습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기능, 태도에 최소한으로 도달한 정도를 의미한다.

※ 학기(학년)초에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포함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 계획을 마련(학교 교육 계획 혹은 별도 관리)하여 이를 교수·학습에 활용하여야 한다.

법적근거

기재요령
안내

목적 등

인적·학적
사항

출결상황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1학년)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2·3학년)창의적
체험활동
상황교과학습
발달상황독서활동
상황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기타
사항 등

참고자료

나. 보통교과는 '성취도(A-B-C-D-E)'와 '석차등급(1등급-9등급)'으로, 전문교과는 '성취도(A-B-C-D-E)'로 성적을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을 참조한다.

〈예시〉 2015 개정 교육과정

구 분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 등급	비 고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보통교과	공통 과목	○	○	○	5단계	○	○	• (성취도 3단계) 과학탐구실험 ※ 과학탐구실험은 석차등급 미산출	
	일반 선택 과목	기초/탐구/생활·교양	○	○	○	5단계	○	○	• 교양 교과(군) 제외
		체육·예술	-	-	-	3단계	-	-	• 수강자수 입력하지 않음
	진로 선택 과목 ※기초/탐구/생활·교양/체육·예술	○	○	- ※ 성취도별 분포비율 입력	3단계	○	-	• 진로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 I·II' 포함 • 교양 교과(군) 제외 • 석차등급 및 '표준편차' 삭제, '성취도별 분포비율' 입력	
	교양 교과(군)	-	-	-	P	-	P		
전문교과 I	○	○	○	5단계	○	○	• (성취도 3단계) 융합과학 탐구, 과학 과제 연구,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		
전문교과 II	○	○	○	5단계	○	-	• 석차등급은 산출하지 않음		
전문교과 III	○	○	○	5단계	○	-	• 석차등급은 산출하지 않음 •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한함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 I 중 수강자수 13명 이하인 과목		○	○	○	교과(군)별 3단계 또는 5단계	○	·, 또는 '0등급'	• 보통교과 공통과목 과학탐구실험, 진로 선택과목(진로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포함),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	
공동교육과정 과목		○	○	○	교과(군)별 3단계 또는 5단계	○	-	• 보통교과 진로선택과목(진로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포함),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	
학교 밖 교육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 및 고시 외 과목 포함), 교양 교과(군), 전문교과 II	• 학교 밖 교육으로 이수한 경우 '·' 표기	

다. 미래 지능정보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선택권을 강화하는 등 학생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편을 강조한 『2015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고시(2015.9.) 하였다.

1)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고교단계에서 배워야 할 필수적인 내용으로 ‘공통과목’을 신설하였으며,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선택과목’(일반 선택, 진로선택)을 세분화하였다.

2)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전문교과Ⅱ를 전문 공통과목, 기초과목, 실무과목으로 개편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연계를 강화하였다.

라.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산업체 현장실습, 직업교육 위탁과정 등의 성적처리 방안은 ‘별표 9’의 해설 ‘다목 3)의 파)’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 성적처리 방식, 하) 현장실습생 성적처리 방식을 따른다.

마.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의 ‘석차등급’은 공란으로 두며, ‘비고’에는 자동으로 ‘공동’으로 표시된다.

바. ‘학교 밖 교육’으로 이수한 과목의 ‘비고’에는 자동으로 ‘학교 밖 교육’이 표시된다.

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는 학생들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학생들의 교과 특성은 교사가 교과학습 평가 및 수업 과정에서 수시·상시로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의 전 영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술은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에 근거하여 학생 개인의 성취과정과 성취특성이 명료히 드러나도록 하되, 수업에서 이루어진 활동의 단순 나열이나 이미 성취기준에 명시된 지식의 단순 서술은 지양함.

2.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가. 평가의 목표 및 방침

1) 교육부훈령의 교과학습발달상황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모두 적용되는 것이다. 각급 학교에서는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등을 제고하여,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2) 학교는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기반한 평가 계획에 따라 교수·학습과정에서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중심 평가를 통해 교수·학습의 질을 제고한다.

3) 교과협의회를 운영할 수 없는 학교는 학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4) 수행평가는 성취기준에 기반하여 수업시간 중에 실시한다.

법적근거

기재요령
안내

목적 등

인적·학적
사항

출결상황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1학년)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2·3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독서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타
사항 등

참고자료

5)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실시 비율, 서·논술형 문항 출제 비율 등 평가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실시한다.

※ 단, 학생의 발달 특성 및 과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지필평가는 서·논술형 문항만으로도 평가할 수 있음.

6)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7)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부득이하게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에 부모가 교직원으로 재직하는 경우에는 평가 등 자녀와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유의한다.

-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평가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8) 부정행위 예방대책은 '고사 중 소지 금지 물품, 부정행위 유형, 감독 및 고사실 배정 방법 등 구체적인 고사 시행 방법, 감독관 유의사항, 부정행위자 처리 및 지도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부정행위 발생 시 처리절차 및 관련자 성적관련 처리기준은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포함하고, 관련자 징계규정은 '학칙'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주요 용어 정리

1) 본 훈령에서 '지필평가'는 '중간 또는 기말고사(1회, 2회고사 등)'와 같은 '일제식 정기고사'를 의미하며, '문항정보표'의 구성에 따라 '선택형'과 '서답형'으로 구분한다. 단,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실시하는 '영어듣기평가'는 수행평가로 간주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형성평가 및 수행평가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선택형' 및 '서답형' 문항으로 구성된 평가는 본 훈령의 '지필평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지필평가 문항 중 선택형 문항(진위형, 배합형, 선다형), 서답형 문항(완성형, 단답형, 서술형, 논술형)의 구분은 「고등학교 학생평가 안내서(툇아보기)」 자료 참고

2) '수행평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가) 학습과제: 학습자들에게서 성취되기를 기대하는 교육과정상 각 교과 교육목표와 관련 되는 것으로, 실제 생활에 가치 있고 중요하며 유용한 과제를 의미한다.

나) 수행: 학생이 단순히 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답을 구성하는 것, 산출물이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태도나 가치관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다) 관찰: 학습자가 수행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를 평가자가 읽거나, 듣거나, 보거나, 느끼거나 하는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라) 판단: 평가자가 관찰한 것을 객관성·합리성·타당성·신뢰성 등이 있는 기준을 준거로 점수화하거나, 문장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 수행평가 과제 유형은 「고등학교 학생평가 안내서(툇아보기)」 자료 참고

(예) 서술·논술, 구술·발표, 토의·토론, 프로젝트, 실험·실습, 포트폴리오 등

3) ‘성취기준의 재구조화’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실제 평가의 상황에서 준거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성취기준을 통합하거나 일부 내용을 압축하여 재구조화 할 경우, 성취기준의 내용요소 일부가 임의로 삭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일부 내용요소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학습 및 평가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학년(군), 학교급 및 교과(군)간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다. 평가 방법

1) 평가 계획 수립

가) 교과학습의 평가(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위하여 학기(학년) 평가 계획을 학년별·교과목별로 수립하되,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 (1) 평가의 목적, 평가의 방향과 방침, 평가 유의사항 등
- (2) 평가(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 요소, 방법, 시기, 횟수, 반영비율 등
- (3) 교과목별 기준 성취율과 성취도
- (4) 공통과목 국어, 수학, 영어 및 전문교과Ⅱ 실무과목의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 설정
- (5) 수행평가의 세부기준(영역별 배점과 채점기준), 결시자와 학적변동자 처리 기준 등

나) ‘평가(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평가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을 의미하며, ‘교육과정의 영역, 핵심개념, 기능 등’을 활용하여 교과 및 학교의 특성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교과별·학년별 평가 계획은 학기 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 실시 전에 평가 방법 및 채점기준 등 평가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학생에게 안내하여 학생들이 해당 평가의 평가 방법 및 평가 요소를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부적인 채점기준을 모두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 채점기준에 포함된 평가 요소를 공개하도록 한다. 또한, 평가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변경사항을 확정하고, 평가 실시 전에 변경사항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학교는 지필평가 기출문제를 공개하되, 공개범위와 방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함.

※ 평가 요소는 교육과정 성취기준 도달의 증거로, 학생들이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평가 내용을 말함.

법적근거

기재요령
안내

목적 등

인적·학적
사항

출결상황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1학년)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2·3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독서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타
사항 등

참고자료

라) 학기(학년)초에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기준을 마련(교과교육과정에 포함 혹은 별도 관리)하여 이를 교수·학습에 활용하고, 이에 근거하여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2) 평가 운영

가) 지필평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문항오류가 없도록 교과 내 검토를 강화하여야 한다.

나) 지필평가의 문항정보표에 내용영역, 성취기준이 표시되도록 한다.

다) 학기 중 전출 등의 학적변동자에 대한 인정점수 부여 시 평가 만점 기준의 차이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필평가의 만점은 100점으로 한다.

라) 석차등급을 산출함에 따라 위의 별표 9의 '4조 나목 2)'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모든 출제 원안에는 문항별 배점을 표시하되, 평가의 변별력을 최대한 높이고 동점자가 가능한 한 생기지 않도록 문항 수를 적절하게 출제하고, 문항당 배점 및 채점기준 세분화에 유의한다.

마) 지필평가의 보안 강화를 위해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평가단계별 보안 관리 강화] (예시)

- **(출제 단계)** 교직원 자녀 재학 시 평가 업무 배제, 평가 시행 전 보안 연수 실시 등
- **(인쇄 단계)** 평가관리시설 출입 통제, 인쇄실 내 전자기기 소지 금지, 평가관리시설 출입자 확인 장치(CCTV, 동작 감지센서 등) 설치, 인쇄 시 평가 담당자 입회, 인쇄 담당자 평가지 수령 당일 인쇄(1일 초과분 평가원안 보안 책임자 보관) 등
- **(시행 단계)** 고사 당일 평가지 반출, 평가 종료 후 답안지 매수 확인 등
- **(채점 단계)** 답안지 인수 후 매수 확인, 채점기간 중 학생 통제 등

바) 수행평가는 학교 및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구안하여 적용할 수 있다.

사) 수행평가의 기본점수 부여 여부 및 부여범위 결정 시에는 평가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 수행평가 문항 출제는 수행평가 출제 계획표 등을 작성하여 활용한다.

자) 수행평가는 학생의 학습과제 수행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

차)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에는 사전 준비가 필요한 암기식 수행평가 등이 포함됨을 유의하여야 함.

※ 복수의 학생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모둠활동 등을 평가할 때에는 개별 학생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개인별 학습과제에 대한 수행과정과 결과를 평가해야 함.

3)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가)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해당 과목에 대한 동점자처리규정 및 과목별 분할점수 산출 방식을 명시한다.

※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는 과목은 동점자 처리 규정을 등록하지 않음.

나)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 I'은 '성취도(A-B-C-D-E 또는 A-B-C)'와 '석차등급(1~9 등급)'을 병기하여 성적을 산출한다.

※ 다만, 보통교과의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선택 과목은 '성취도(A-B-C)'만으로 성적을 산출하며, 교양교과(군)는 '성취도'와 '석차등급'에는 'P'를 각각 입력함.

※ 보통교과 공통과목 '과학탐구실험' 및 '진로 선택 과목'의 석차등급은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를 3단계(A~C)로 산출함(세부적인 성적 산출 정보는 훈령 제15조 참조).

다) 전문교과Ⅱ, Ⅲ은 성취도를 5단계(A-B-C-D-E)로 평정하며, '석차등급'은 산출하지 않는다.

※ 다만, 전문교과Ⅱ 기초과목은 실무과목과 동일하게 능력단위로 산출할 수 있으며, 능력단위 평가 시 이수시간, 원점수, 성취도만 산출함.

라) 전문교과 I 체육계열·예술계열 교과(군)의 과목은 '5단계·9등급'으로 성적처리 하고, 보통교과 체육·예술 교과(군)의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 포함)은 '성취도 3단계·성취도별 분포비율'로 성적처리 한다.

마)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따라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과목 편제를 변경하여 편성하는 경우에는 편성된 교과(군)의 평가방법 및 성적처리 유형을 준용한다.

바) 가급적 수행평가 배점과 반영비율을 조정하여 환산점수에서 소수 둘째 자리 이상의 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예) 수행평가 점수 30점 반영비율 20%이고, 학생이 28점을 받은 경우 환산점수는 18.6666...의 무한 소수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수행평가 배점과 반영비율을 적절히 선정하여 무한 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함.

사)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 처리 기준일은 교과(목)별 평가 계획 상 최종 시험일(기말고사, 2차 시험 등)이며, '명예졸업' 학생은 퇴학, 자퇴, 제적, 휴학 학생에 준하여 성적을 처리한다.

※ 과목별 결시생의 인정점 부여는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하되, 인정점 부여 시 교육정보시스템의 기준고사/영역의 기준점수와 평균점수·평균점수비율에서 사용하는 평균은 당해 지필평가(중간고사, 기말고사, 1차 시험, 2차 시험 등)에 응시한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응시학생의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함.

※ 교육정보시스템의 동점자처리규정에서 지필평가 배점순을 지정할 경우 결시생의 인정점은 점수만 존재하고 해당고사의 배점 정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배점 정보에 의해 해당 고사를 응시한 학생이 우선이 됨.

법적근거

기재요령
안내

목적 등

인적·학적
사항

출결상황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1학년)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2·3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독서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타
사항 등

참고자료

<예시> 고등학교 과목별 성적일람표 및 해석

[보통교과]

2024학년도 제1학기
국어과 성적일람표

제1학년 (강의실명)

교과담당교사 () 인

평가방법 (반영비율)		지필평가(60%)		수행평가(40%)				합계	원점수	성취도	석차 등급	석차 (동석차수) /수강자수
		1회 (30%)	2회 (30%)	○○○ (10%)	◇◇◇ (10%)	□□□ (10%)	△△△ (10%)					
명칭,영역 (반영비율)	반/번호, 성명											
1/1	김길동	28.50	29.40	8.80	9.60	8.80	10.00	95.10	95	A	1	4(15)/532
1/2	나민주	25.50	19.20	6.00	8.00	7.00	5.00	70.70	71	C	5	273/532
1/3												
수강자 최고점		30.00	30.00	10.00	10.00	10.00	10.00	100.00				
수강자 최저점		9.95	10.00	5.00	6.00	7.00	5.00	42.95				
수강자 평균		23.42	25.74	8.40	8.16	8.76	7.59	82.07				
강의실 평균		21.24	24.43	8.50	7.52	8.91	7.35	77.95				
과목 평균									82.1			
과목 표준편차									10.1			

[전문교과]

2024학년도 제1학기
상업 경제과 성적일람표

제1학년 (강의실명)

교과담당교사 () 인

평가방법 (반영비율)		지필평가(60%)		수행평가(40%)				합계	원점수	성취도 (수강자수)
		1회 (30%)	2회 (30%)	○○○ (10%)	◇◇◇ (10%)	□□□ (10%)	△△△ (10%)			
명칭,영역 (반영비율)	반/번호, 성명									
1/1	김길동	28.50	29.40	8.80	9.60	8.80	10.00	95.1	95	A(553)
1/2	나민주	25.50	19.20	6.00	8.00	7.00	5.00	70.7	71	C(553)
1/3										
수강자 최고점		30.00	3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강자 최저점		9.95	10.00	5.00	6.00	7.00	5.00	42.9		
수강자 평균		23.42	25.74	8.40	8.16	8.76	7.59	82.0		
강의실 평균		21.24	24.43	8.50	7.52	8.91	7.35	77.9		
과목 평균									82.1	
과목 표준편차									10.1	

[진로 선택 과목]

2024학년도 제1학기 실용 국어과 성적일람표

제1학년 (강의실명)

교과담당교사 () 인

평가방법 (반영비율)		지필평가(60%)		수행평가(40%)				합계	원점수	성취도 (수강자수)
		1회 (30%)	2회 (30%)	○○○ (10%)	◇◇◇ (10%)	□□□ (10%)	△△△ (10%)			
반/번호, 성명	명칭, 영역 (반영비율)									
1/1	김길동	28.50	29.40	8.80	9.60	8.80	10.00	95.1	95	A(553)
1/2	나민주	25.50	19.20	6.00	8.00	7.00	5.00	70.7	71	B(553)
1/3										
수강자 최고점		30.00	3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강자 최저점		9.95	10.00	5.00	6.00	7.00	5.00	42.9		
수강자 평균		23.42	25.74	8.40	8.16	8.76	7.59	82.0		
강의실 평균		21.24	24.43	8.50	7.52	8.91	7.35	77.9		
과목 평균									82.1	
성취도별 분포비율										A(30.2) B(45.3) C(24.5)

- ‘김길동’의 지필평가 1회 환산점수 28.50은 100만점에서 95점을 받았을 경우이며, 수행평가 ○○○ 환산점수 8.80은 50점 만점에서 44점을 받았을 경우이다.
- 수강자 최고점·수강자 최저점·수강자 평균·강의실 평균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 까지 산출한다.
-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 I’ 성적 일람표의 합계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반영비율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출하며, 이를 이용하여 석차, 동석차 및 석차등급을 구한다.
-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 I’ 성적 일람표의 ‘합계’, ‘석차(동석차수)/수강자수’는 ‘석차등급’을 산정한 근거를 참고로 보이기 위한 것이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본란이 없다.
- ‘전문교과 II, III’ 성적일람표의 합계는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며, 원점수는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산출하고, 성취도는 원점수를 이용하여 구한다.

▶ 보통교과 ‘과학탐구실험’과 ‘진로 선택 과목’은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으므로, 성적일람표 환산 점수 산출 방법은 ‘전문교과II’의 방법을 준용한다.

- 과목평균·과목표준편차는 수강자 점수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의미하며,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 하고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 성취율의 기준 점수는 원점수로 한다.
- 성취도별 분포비율은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법적근거

기재요령
안내

목적 등

인적·학적
사항

출결상황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1학년)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2·3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독서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타
사항 등

참고자료

아) 교과별 평정 방식(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교과목		성취도
교과 영역	과목	
• 기초(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 공통 과목, 일반 선택	A, B, C, D, E
• 탐구(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 공통 과목(과학탐구실험 제외), 일반 선택	
• 생활(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	• 일반 선택	
• 전문 교과 I(과학 계열, 체육 계열, 예술 계열, 외국어 계열, 국제 계열)	•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 제외	A, B, C
• 전문 교과 II, III	• 전체 과목	
• 체육·예술	• 일반 선택, 진로 선택	
• 기초, 탐구, 생활	• 진로 선택, 공통 과목(과학탐구실험)	A, B, C
• 전문 교과 I(과학 계열, 국제 계열)	•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	
• 교양(철학, 논리학 등)	• 전체 과목	P

※ 성취도는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에 따라 평정함.

자) 등급별 학생수 산정 방식

- (1) 수강자수와 등급별 누적비율을 곱하여 반올림한 값을 그 구간까지의 누적인원으로 한다.
- (2) 등급별 인원을 정하여 해당석차의 학생에게 등급을 부여한다.

〈예시 자료(수강자수 178명인 경우)〉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누적비율	4%	11%	23%	40%	60%	77%	89%	96%	100%
누적인원	7.12	19.58	40.94	71.2	106.8	137.06	158.42	170.88	178
반올림값	7	20	41	71	107	137	158	171	178
등급인원	7	13	21	30	36	30	21	13	7

- (3) 수강자수에 따른 등급별 학생수: 수강자수별 등급인원 조건표 참조

차) 중간석차 적용 방식

- (1)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동점자(동석차) 처리 규정을 둘 수 있으며, 동점자(동석차)가 발생했을 경우는 중간석차를 적용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 중간석차 = 석차 + (동석차 인원수 - 1) / 2

〈예: 수강자수 96명인 과목에서 1등 동점자가 7명인 경우〉

- 수강자수가 96명인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1등급 학생은 4명이나 현재 1등인 학생이 7명 이므로, 중간석차백분율을 적용하면 4.17%이므로 모두 2등급을 부여한다.

• 중간석차 = 석차 + (동석차 인원수 - 1) / 2 = 1 + (7 - 1) / 2 = 4

• 중간석차백분율 = 4 / 96 × 100 = 4.17%

- 위 경우 2등급을 부여하므로 1등급인 학생은 없게 된다.

(예: 수강자수가 130명인 과목에서 1등 1명, 2등 동점자가 6명인 경우)

- 수강자수가 130명인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1등급 학생은 5명이나, 예시의 경우 2등인 학생 6명은 1등급 인원을 초과하므로 중간석차백분율을 적용하면 3.46%로 이 학생들은 1등급을 부여한다.
- 중간석차 = 석차 + (동석차 인원수 - 1) / 2 = 2 + (6 - 1) / 2 = 4.5
- 중간석차백분율 = 4.5 / 130 × 100 = 3.46%
- 따라서 위 경우 1등 1명과 2등 6명에게 1등급을 부여하므로, 1등급 인원을 초과하게 된다.

(2) 중간석차 적용은 동점자(동석차)가 등급경계에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등급 범위 내에서 생기는 동점자(동석차)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카) 수강자수 산정 방식

(1) 동일한 교과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 내에서 동일한 교과·과목이고 단위(학점)수, 수강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수로 하여 성적을 산출한다.

- 다만, 교육과정 편제상으로 학습내용과 성취기준이 달라 평가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당해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달리할 수 있음.

예) 각 학년이 한국사를 2단위씩 3개 학년에 걸쳐 편성하여, 특정 학기에 이수하는 단위수는 동일하나 학년별 학습내용과 성취기준이 달라 평가를 학년별로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

(2) '학과별로 수강자수를 결정할 수 있는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48조에 따른 학과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의거한 시·도교육청의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과별로 학생을 선발한 학교를 의미한다.

타) 위탁학생 성적처리 방식

(1) 위탁학생이 위탁교(기관)에서 성적을 취득한 경우, 위탁교(기관)의 성적을 인정하고,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때, 위탁교(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유사) 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한다. 다만, 성적(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등)이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문장으로 이수 내용만을 입력한다.

* 위탁교육기관에서 보내온 과목이 [학적-위탁·현장실습학생관리-위탁·현장실습학생관리-자료관리], '성적의 {과목추가}-과목찾기'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과목찾기의 과목명 목록'에서 유사한 과목으로 선택함.

(가) 위탁학생이 학기말 성적 처리 이전에 복교하는 경우,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며, 자체 평가 실시 및 성적 처리가 불가능한 위탁교(기관)에 위탁된 학생은 재적교 평가에 응시한다(미응시 시 처리 방법은 [참고자료 7] '위탁학생, 병원 학교·원격수업 등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 참조).

파)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 성적처리 방식

(1) 일반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 등의 직업교육 위탁과정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입력한다.

법적근거

기재요령
안내

목적 등

인적·학적
사항

출결상황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1학년)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2·3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독서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타
사항 등

참고자료

(가) 일반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위탁교과와 특성화 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포함)의 개인별 평가가 곤란한 전문(공), 실기(습) 교과는 평가한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 등을 기록하거나, 이수 여부만을 기록한다.

(나) 일반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소속 학교에서 이수하는 보통교과 등의 수강자수는 소속 학교의 학생과 합해서 산출·입력한다. 다만, 이수단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강자수는 분리한다.

(다) 산업(정보)학교, 직업교육거점학교, 시·도교육청이 인정하는 직업훈련기관 등 일반고등학교 직업교육 위탁과정 담당 기관에서 평가한 이수 과목,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표준편차, 성취도, 이수학생수를 학생이 재적한 학교에 통보하면 이것을 그대로 입력해 줄 수 있다.

※ 위탁학생의 성적은 교육정보시스템 [학적·위탁·현장실습학생관리-위탁·현장실습학생관리-자료관리]의 '성적' 항목에서 입력함.

(라) 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성취도를 산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P(이수)'로 처리한다.

〈성취도를 산출하지 않는 경우〉

- 교육과정상 개인별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성취도 산출이 위탁교육 목적 달성에 지장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이수 내용, 시간수, 수업절차, 운영방식 등을 고려할 때 성취도를 산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직업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고등학생이 타학교 등에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의하여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강하였을 경우 포함) 수강자수는 그 과목(과정)을 수강한 학생수로 하되, 계열이 다른 경우는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가) 계열구분

- ① 일반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 포함)
- ②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농생명산업계열, 공업계열, 상업정보계열, 수산·해운계열, 가사·실업계열 등
- ③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과학계열, 외국어계열, 국제계열, 예술계열, 체육계열

〈예시〉 일반고등학교 A(10명), B(10명), C(10명),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20명 총 50명이 직업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등에서 '드론 운용'을 수강하였을 경우 수강자수는 일반고등학교는 30명,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20명으로 분리하여 산출할 수 있음.

하) 현장실습생 성적처리 방식

- (1)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도제식 현장교육훈련(OJT) 참여 학생 포함)에 대해서는 이수 여부, 실습기간을 해당 학교장 또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방법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입력한다.
- (가) 현장실습을 제외한 교과 성적은 학기별 종합 성적에 의하여 교과목별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석차등급 또는 성취도, 수강자수를 산출한다.
- (나) 현장실습 성적은 산업체에서 평가한 것과 학교에서 평가한 것을 합산하여 실습 참여 학생의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등 비교과 영역의 입력은 현장실습(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등) 기간 중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경우 재적학교 및 현장실습 대상 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학급담임교사가 작성한다.
- (라) 현장실습을 전문교과에 포함하여 운영할 경우,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구체적인 평가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하여 입력하되,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현장실습유형, 직무분야(17개 교과군 중에서 입력), 기간, 내용을 다음 예시와 같이 입력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과 목</th> <th>세부능력 및 특기사항</th> </tr> </thead> <tbody> <tr> <td>현장실습유형: 현장체험학습(산업체 견학)</td> <td></td> </tr> <tr> <td>현장실습 직무분야: 기계</td> <td></td> </tr> <tr> <td>실습기간: 2024.00.00.-2024.00.00.</td> <td></td> </tr> <tr> <td>실습내용: 자동차 조립 과정 견학</td> <td></td> </tr> </tbody> </table>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현장실습유형: 현장체험학습(산업체 견학)		현장실습 직무분야: 기계		실습기간: 2024.00.00.-2024.00.00.		실습내용: 자동차 조립 과정 견학		<table border="1"> <thead> <tr> <th>과목</th> <th>세부능력 및 특기사항</th> </tr> </thead> <tbody> <tr> <td>현장실습유형: 도제교육(미용)</td> <td></td> </tr> <tr> <td>현장실습 직무분야: 미용·관광·레저</td> <td></td> </tr> <tr> <td>실습기간: 2024.00.00.-2024.00.00.</td> <td></td> </tr> <tr> <td>실습내용: 헤어디자인 L3</td> <td></td> </tr> </tbody> </table>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현장실습유형: 도제교육(미용)		현장실습 직무분야: 미용·관광·레저		실습기간: 2024.00.00.-2024.00.00.		실습내용: 헤어디자인 L3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현장실습유형: 현장체험학습(산업체 견학)																					
현장실습 직무분야: 기계																					
실습기간: 2024.00.00.-2024.00.00.																					
실습내용: 자동차 조립 과정 견학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현장실습유형: 도제교육(미용)																					
현장실습 직무분야: 미용·관광·레저																					
실습기간: 2024.00.00.-2024.00.00.																					
실습내용: 헤어디자인 L3																					
<table border="1"> <thead> <tr> <th>과목</th> <th>세부능력 및 특기사항</th> </tr> </thead> <tbody> <tr> <td>현장실습유형: 산업체 현장실습</td> <td></td> </tr> <tr> <td>현장실습 직무분야: 재료</td> <td></td> </tr> <tr> <td>실습기간: 2024.00.00.-2024.00.00.</td> <td></td> </tr> <tr> <td>실습내용: 피복 아크 용접</td> <td></td> </tr> </tbody> </table>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현장실습유형: 산업체 현장실습		현장실습 직무분야: 재료		실습기간: 2024.00.00.-2024.00.00.		실습내용: 피복 아크 용접		<table border="1"> <thead> <tr> <th>과목</th> <th>세부능력 및 특기사항</th> </tr> </thead> <tbody> <tr> <td>현장실습유형: 기타(연계교육형 현장실습)</td> <td></td> </tr> <tr> <td>현장실습 직무분야: 디자인·문화 콘텐츠</td> <td></td> </tr> <tr> <td>실습기간: 2024.00.00.-2024.00.00.</td> <td></td> </tr> <tr> <td>실습내용: 웹페이지 제작 및 유지</td> <td></td> </tr> </tbody> </table>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현장실습유형: 기타(연계교육형 현장실습)		현장실습 직무분야: 디자인·문화 콘텐츠		실습기간: 2024.00.00.-2024.00.00.		실습내용: 웹페이지 제작 및 유지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현장실습유형: 산업체 현장실습																					
현장실습 직무분야: 재료																					
실습기간: 2024.00.00.-2024.00.00.																					
실습내용: 피복 아크 용접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현장실습유형: 기타(연계교육형 현장실습)																					
현장실습 직무분야: 디자인·문화 콘텐츠																					
실습기간: 2024.00.00.-2024.00.00.																					
실습내용: 웹페이지 제작 및 유지																					

- (마) 단일과목(예: 현장실습)으로 개설하였을 경우 이수단위(학점)와 함께 원점수 (필요시 과목평균, 표준편차) 등을 입력하거나 이수여부만을 입력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현장실습유형, 직무분야(17개 교과군 중에서 입력), 기간, 내용 등을 입력한다.
- (바) 현장실습을 교과목에 포함하지 않고 창의적 체험활동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활동의 평가, 기록 방법에 따르고,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년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서술식으로 입력한다.

법적근거

기재요령
안내

목적 등

인적·학적
사항

출결상황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1학년)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2·3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독서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타
사항 등

참고자료

(2) 특수교육 대상자의 현장 실습생에 대해서는 이수 여부, 실습기간을 해당 학교장 또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력하며, (1)의 (가)~(바)의 내용을 준용하여 입력할 수 있다.

※ 이때, '현장실습 직무분야'는 교육과정의 해당 교과(군) 중에서 입력함.

거) 공동교육과정 성적처리 방식

(1) 거점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 수'로 하여 성적을 산출한다(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포함), 특성화고등학교 등).

※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의미함.

- 일반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또는 특성화고등학교) 간 전문 교과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보통교과 중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고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직업계열 학과 간 전문 교과Ⅱ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문 교과Ⅱ 과목'으로 편성하고 전문 교과Ⅱ 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 일반고등학교 직업계열 학과: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

※ 구체적인 성적 산출 방식은 본 훈령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제15항 및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등학교」 120쪽 <예시>표 참조

(2) 본교(거점학교)와 타교 학생(공동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동일 과목이라도 별도로 개설·운영하고, 별도로 성적을 산출할 수 있다.

< 공동교육과정 관련 과목 개설 및 성적 산출 >

구분	과목(강좌) 개설		성적 산출
본교-타교학생 미구분 운영	본교(거점학교) 학생 + 타교 학생 (공동교육과정 해당)		공동교육과정 관련 규정에 따라 성적 산출
본교-타교학생 구분 운영	본교(거점학교)학생 (공동교육과정 아님)	타교 학생 (공동교육과정 해당)	→ 공동교육과정 관련 성적 규정은 타교 학생(공동교육과정)에 한해 적용

너) 학교 밖 교육 성적처리 방식

(1) 일반고등학교 학교 밖 교육: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및 고시 외 과목 포함), 교양 교과(군)

-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보내온 '교과', '과목', '단위수' 및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하고, 이외 항목은 모두 '.'을 입력한다. 다만,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객관적 교육내용(과목명, 이수단위 또는 학점)만을 입력한다.

〈일반고 학교 밖 교육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예시〉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과목명: 학교 밖 교육을 통해 ○단위 이수함.	

(2)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직업계열 학과의 학교 밖 교육: 전문교과II

-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보내온 ‘교과’, ‘과목’, ‘학점’ 및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하고, 이외 항목은 모두 ‘.’을 입력한다. 다만,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객관적 교육내용(과목명, 직무분야, 이수학점)만을 입력한다.

〈직업계고 학교 밖 교육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예시〉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과목명: 학교 밖 교육을 통해 직무분야(예: 기계, 디자인, 재료, 전자 등)를 ○학점 이수함.	

- 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결과(학기말 포함)를 학생 본인에게 확인할 때에는 ‘개인별 성적 일람표’ 등을 활용하여 다른 학생에게 성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학생 본인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공개하여 확인한다.
- 러)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성적처리가 끝난 지필평가 학생 답안지’와 함께 ‘문항정보표와 출제원안지’ 등을 당해 학교에 5년간 보관한다.
- 머) 지필평가의 학생 답안지의 보관 기간을 ‘5년’으로 변경한 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학교기록물 관리 지침」에 따른 감사 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 버) 별표 9의 ‘4조 라목 11)’의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라 함은 학생들의 이의신청·접수·처리·확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된 후 작성된 성적 기록 자료(수행평가 성적 일람표 등) 등을 의미한다.
- 서) 학기 초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생의 수행평가 결과물의 보관 기간을 결정하며, 학생들의 이의신청·접수·처리·확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된 후 보관한다.
- 어) 상급학교 진학 시에 입학전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 등은 학교장이 판단하여 보관방법과 기간 등을 결정한다.
- 저) 학교장은 수행평가가 공정하고 타당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채점) 기준을 마련하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를 안내하여 수행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법적근거

기재요령
안내

목적 등

인적·학적
사항

출결상황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1학년)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2·3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독서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타
사항 등

참고자료

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1)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며, 학업성적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다만, 학교의 형편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거나 타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 2)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부모위원에게 사전 공개가 불가한 안건은 학부모위원의 참여를 제한한다.
- 3) 별표 9의 ‘5조 다목’의 위원회 구성에서 ‘교무분장’이라 함은 부서별 또는 교과별 업무 분장을 의미한다.
- 4) 별표 9의 ‘5조 바목’의 심의내용 중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항’의 예로 장기결석일수(지각·조퇴·결과 횟수 포함) 등이 있다.

마. 기타

- 1) 복학 및 재·전·편입학한 학생의 성적 일부가 중복된 경우 복학 및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으로 한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을 참조한다.

	1회고사 성적		2회고사 성적		비고
	원적교	재입학 등	원적교	재입학 등	
기본 원칙	○	×	×	○	원적교 1회고사+재입학 등 2회고사
동일 평가 성적 중복	○	×	○	○	원적교 1회고사+재입학 등 2회고사
동일 평가 성적 미비	×	×	×	○	재입학 등 2회고사에 따른 인정점+재입학 등 2회고사
동일 평가 성적 미비 (모든 평가)	×	×	×	×	시·도지침*에 따라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 * 응시기회가 모두 없었을 경우와 모두 결시한 경우에 대한 인정점 부여 기준 마련

※ 수행평가의 경우, 복학 및 재·전·편입학한 학생의 성적처리 방안을 평가 계획에 포함하되, 교과협의회를 통해 원적교 성적을 유사한 영역 평가의 성적으로 인정 가능

- 2) 학생이 지필평가 이후 전출·휴학·제적·자퇴·퇴학할 경우, 평가기간 동안 미인정 결시로 인한 인정점은 당해 지필평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입력한다.
- 3) 지필평가 인정점을 부여하는 기준점수는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지필평가 성적이 없는 경우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 4) 학생이 전출할 때에는 본 훈령 제4조제5항 및 그 해설에 따라 전출일자까지 원적교에서 입력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입력하여 전송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자료(성적, 월별 출결상황, 기타 입력사항 등)는 정리하여 전입교로 송부하여야 한다.

5) 재입학, 전입학, 편입학 등 학적변동자의 동일(유사) 과목 성적인정과 반영 방법은 학업 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학업성적관리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6) 교과(목)별 성적 산출 방식은 본 훈령 제15조 및 별표 9에 따른다.

7) 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른 미이수 교과목 보충 학습 과정 입력 방식

가) 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라 공통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보충 학습 과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과목명, 이수기간, 이수 시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예)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한국사: 전입으로 인한 미이수 과목을 ‘보충 학습 과정에 참여하여 ○○시간(2024.○○.○○.-2024.○○.○○.) 이수함.

〈체육·예술(음악/미술)〉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음악: 전입으로 인한 미이수 과목을 ‘보충 학습 과정에 참여하여 ○○시간(2024.○○.○○.-2024.○○.○○.) 이수함.

※ ‘보충 학습 과정’을 ‘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온라인수업)’으로 실시한 경우를 포함하며,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함.

나) 전입생이 집중이수로 인해 특정 교과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 이를 인정한다.

8) 전체 고등학교에 편성된 보통교과 공통과목의 국어, 수학, 영어와 특성화고등학교(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편성된 전문교과Ⅱ 실무과목은 과목별 학업 성취율 40%를 최소 성취수준으로 설정하되, 이에 따른 분할 점수는 해당과목별로 학교가 정할 수 있다.

※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3111(2021.8.24.))

9)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 제3조의2에 따라 학교 외 학습경험의 과목 이수 인정을 받은 방송통신고등학교 과목 이수 입력 방식

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 제3조의2에 따라 과목 이수를 인정받은 학생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과목명, 이수시간(단위)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생활과 과학: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을 통해 ○단위 이수함.

법적근거

기재요령
안내

목적 등

인적·학적
사항

출결상황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1학년)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2·3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독서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타
사항 등

참고자료

수강자수별 등급인원 조건표

등급 인원	1	2	3	4	5	6	7	8	9
1	0.04	0.11	0.23	0.40	0.60	0.77	0.89	0.96	1
2	0.08	0.22	0.46	0.80	1.20	1.54	1.78	1.92	2
3	0.12	0.33	0.69	1.20	1.80	2.31	2.67	2.88	3
4	0.16	0.44	0.92	1.60	2.40	3.08	3.56	3.84	4
5	0.20	0.55	1.15	2.00	3.00	3.85	4.45	4.80	5
6	0.24	0.66	1.38	2.40	3.60	4.62	5.34	5.76	6
7	0.28	0.77	1.61	2.80	4.20	5.39	6.23	6.72	7
8	0.32	0.88	1.84	3.20	4.80	6.16	7.12	7.68	8
9	0.36	0.99	2.07	3.60	5.40	6.93	8.01	8.64	9
10	0.40	1.10	2.30	4.00	6.00	7.70	8.90	9.60	10
11	0.44	1.21	2.53	4.40	6.60	8.47	9.79	10.56	11
12	0.48	1.32	2.76	4.80	7.20	9.24	10.68	11.52	12
13	0.52	1.43	2.99	5.20	7.80	10.01	11.57	12.48	13
14	0.56	1.54	3.22	5.60	8.40	10.78	12.46	13.44	14
15	0.60	1.65	3.45	6.00	9.00	11.55	13.35	14.40	15
16	0.64	1.76	3.68	6.40	9.60	12.32	14.24	15.36	16
17	0.68	1.87	3.91	6.80	10.20	13.09	15.13	16.32	17
18	0.72	1.98	4.14	7.20	10.80	13.86	16.02	17.28	18
19	0.76	2.09	4.37	7.60	11.40	14.63	16.91	18.24	19
20	0.80	2.20	4.60	8.00	12.00	15.40	17.80	19.20	20
21	0.84	2.31	4.83	8.40	12.60	16.17	18.69	20.16	21
22	0.88	2.42	5.06	8.80	13.20	16.94	19.58	21.12	22
23	0.92	2.53	5.29	9.20	13.80	17.71	20.47	22.08	23
24	0.96	2.64	5.52	9.60	14.40	18.48	21.36	23.04	24
25	1.00	2.75	5.75	10.00	15.00	19.25	22.25	24.00	25
26	1.04	2.86	5.98	10.40	15.60	20.02	23.14	24.96	26
27	1.08	2.97	6.21	10.80	16.20	20.79	24.03	25.92	27
28	1.12	3.08	6.44	11.20	16.80	21.56	24.92	26.88	28
29	1.16	3.19	6.67	11.60	17.40	22.33	25.81	27.84	29
30	1.20	3.30	6.90	12.00	18.00	23.10	26.70	28.80	30
31	1.24	3.41	7.13	12.40	18.60	23.87	27.59	29.76	31
32	1.28	3.52	7.36	12.80	19.20	24.64	28.48	30.72	32
33	1.32	3.63	7.59	13.20	19.80	25.41	29.37	31.68	33
34	1.36	3.74	7.82	13.60	20.40	26.18	30.26	32.64	34
35	1.40	3.85	8.05	14.00	21.00	26.95	31.15	33.60	35
36	1.44	3.96	8.28	14.40	21.60	27.72	32.04	34.56	36
37	1.48	4.07	8.51	14.80	22.20	28.49	32.93	35.52	37
38	1.52	4.18	8.74	15.20	22.80	29.26	33.82	36.48	38
39	1.56	4.29	8.97	15.60	23.40	30.03	34.71	37.44	39
40	1.60	4.40	9.20	16.00	24.00	30.80	35.60	38.40	40
41	1.64	4.51	9.43	16.40	24.60	31.57	36.49	39.36	41
42	1.68	4.62	9.66	16.80	25.20	32.34	37.38	40.32	42
43	1.72	4.73	9.89	17.20	25.80	33.11	38.27	41.28	43
44	1.76	4.84	10.12	17.60	26.40	33.88	39.16	42.24	44
45	1.80	4.95	10.35	18.00	27.00	34.65	40.05	43.20	45
46	1.84	5.06	10.58	18.40	27.60	35.42	40.94	44.16	46
47	1.88	5.17	10.81	18.80	28.20	36.19	41.83	45.12	47
48	1.92	5.28	11.04	19.20	28.80	36.96	42.72	46.08	48

1	2	3	4	5	6	7	8	9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	1		1	
	1	1	1	1	1	1	1	
	1	1	1	2	1	1	1	
	1	1	2	1	2	1	1	
	1	2	1	3	1	2	1	
	1	2	2	2	2	2	1	
1		2	2	3	2	2		1
1	1	1	3	2	3	1	1	1
1	1	1	3	3	3	1	1	1
1	1	2	2	4	2	2	1	1
1	1	2	3	3	3	2	1	1
1	1	2	3	4	3	2	1	1
1	1	2	4	3	4	2	1	1
1	1	3	3	4	3	3	1	1
1	1	3	4	4	4	3	1	1
1	2	2	4	5	4	2	2	1
1	2	3	4	4	4	3	2	1
1	2	3	4	5	4	3	2	1
1	2	3	5	5	5	3	2	1
1	2	3	5	6	5	3	2	1
1	2	4	5	5	5	4	2	1
1	2	4	5	6	5	4	2	1
1	2	4	5	7	5	4	2	1
1	3	3	6	6	6	3	3	1
1	3	4	5	7	5	4	3	1
1	3	4	6	6	6	4	3	1
1	3	4	6	7	6	4	3	1
1	3	4	6	8	6	4	3	1
1	3	5	6	7	6	5	3	1
2	2	5	6	8	6	5	2	2
2	2	5	7	7	7	5	2	2
2	2	5	7	8	7	5	2	2
2	3	4	7	9	7	4	3	2
2	3	5	7	8	7	5	3	2
2	3	5	7	9	7	5	3	2
2	3	5	8	8	8	5	3	2
2	3	5	8	9	8	5	3	2
2	3	6	7	10	7	6	3	2
2	3	6	8	9	8	6	3	2
2	3	6	8	10	8	6	3	2

등급 인원	1	2	3	4	5	6	7	8	9
49	1.96	5.39	11.27	19.60	29.40	37.73	43.61	47.04	49
50	2.00	5.50	11.50	20.00	30.00	38.50	44.50	48.00	50
51	2.04	5.61	11.73	20.40	30.60	39.27	45.39	48.96	51
52	2.08	5.72	11.96	20.80	31.20	40.04	46.28	49.92	52
53	2.12	5.83	12.19	21.20	31.80	40.81	47.17	50.88	53
54	2.16	5.94	12.42	21.60	32.40	41.58	48.06	51.84	54
55	2.20	6.05	12.65	22.00	33.00	42.35	48.95	52.80	55
56	2.24	6.16	12.88	22.40	33.60	43.12	49.84	53.76	56
57	2.28	6.27	13.11	22.80	34.20	43.89	50.73	54.72	57
58	2.32	6.38	13.34	23.20	34.80	44.66	51.62	55.68	58
59	2.36	6.49	13.57	23.60	35.40	45.43	52.51	56.64	59
60	2.40	6.60	13.80	24.00	36.00	46.20	53.40	57.60	60
61	2.44	6.71	14.03	24.40	36.60	46.97	54.29	58.56	61
62	2.48	6.82	14.26	24.80	37.20	47.74	55.18	59.52	62
63	2.52	6.93	14.49	25.20	37.80	48.51	56.07	60.48	63
64	2.56	7.04	14.72	25.60	38.40	49.28	56.96	61.44	64
65	2.60	7.15	14.95	26.00	39.00	50.05	57.85	62.40	65
66	2.64	7.26	15.18	26.40	39.60	50.82	58.74	63.36	66
67	2.68	7.37	15.41	26.80	40.20	51.59	59.63	64.32	67
68	2.72	7.48	15.64	27.20	40.80	52.36	60.52	65.28	68
69	2.76	7.59	15.87	27.60	41.40	53.13	61.41	66.24	69
70	2.80	7.70	16.10	28.00	42.00	53.90	62.30	67.20	70
71	2.84	7.81	16.33	28.40	42.60	54.67	63.19	68.16	71
72	2.88	7.92	16.56	28.80	43.20	55.44	64.08	69.12	72
73	2.92	8.03	16.79	29.20	43.80	56.21	64.97	70.08	73
74	2.96	8.14	17.02	29.60	44.40	56.98	65.86	71.04	74
75	3.00	8.25	17.25	30.00	45.00	57.75	66.75	72.00	75
76	3.04	8.36	17.48	30.40	45.60	58.52	67.64	72.96	76
77	3.08	8.47	17.71	30.80	46.20	59.29	68.53	73.92	77
78	3.12	8.58	17.94	31.20	46.80	60.06	69.42	74.88	78
79	3.16	8.69	18.17	31.60	47.40	60.83	70.31	75.84	79
80	3.20	8.80	18.40	32.00	48.00	61.60	71.20	76.80	80
81	3.24	8.91	18.63	32.40	48.60	62.37	72.09	77.76	81
82	3.28	9.02	18.86	32.80	49.20	63.14	72.98	78.72	82
83	3.32	9.13	19.09	33.20	49.80	63.91	73.87	79.68	83
84	3.36	9.24	19.32	33.60	50.40	64.68	74.76	80.64	84
85	3.40	9.35	19.55	34.00	51.00	65.45	75.65	81.60	85
86	3.44	9.46	19.78	34.40	51.60	66.22	76.54	82.56	86
87	3.48	9.57	20.01	34.80	52.20	66.99	77.43	83.52	87
88	3.52	9.68	20.24	35.20	52.80	67.76	78.32	84.48	88
89	3.56	9.79	20.47	35.60	53.40	68.53	79.21	85.44	89
90	3.60	9.90	20.70	36.00	54.00	69.30	80.10	86.40	90
91	3.64	10.01	20.93	36.40	54.60	70.07	80.99	87.36	91
92	3.68	10.12	21.16	36.80	55.20	70.84	81.88	88.32	92
93	3.72	10.23	21.39	37.20	55.80	71.61	82.77	89.28	93
94	3.76	10.34	21.62	37.60	56.40	72.38	83.66	90.24	94
95	3.80	10.45	21.85	38.00	57.00	73.15	84.55	91.20	95
96	3.84	10.56	22.08	38.40	57.60	73.92	85.44	92.16	96
97	3.88	10.67	22.31	38.80	58.20	74.69	86.33	93.12	97
98	3.92	10.78	22.54	39.20	58.80	75.46	87.22	94.08	98
99	3.96	10.89	22.77	39.60	59.40	76.23	88.11	95.04	99
100	4.00	11.00	23.00	40.00	60.00	77.00	89.00	96.00	100

1	2	3	4	5	6	7	8	9
2	3	6	9	9	9	6	3	2
2	4	6	8	10	9	6	3	2
2	4	6	8	11	8	6	4	2
2	4	6	9	10	9	6	4	2
2	4	6	9	11	9	6	4	2
2	4	6	10	10	10	6	4	2
2	4	7	9	11	9	7	4	2
2	4	7	9	12	9	7	4	2
2	4	7	10	11	10	7	4	2
2	4	7	10	12	10	7	4	2
2	4	8	10	11	10	8	4	2
2	5	7	10	12	10	7	5	2
2	5	7	10	13	10	7	5	2
2	5	7	11	12	11	7	5	2
3	4	7	11	13	11	7	4	3
3	4	8	11	12	11	8	4	3
3	4	8	11	13	11	8	4	3
3	4	8	11	14	11	8	4	3
3	4	8	12	13	12	8	4	3
3	4	9	11	14	11	9	4	3
3	5	8	12	13	12	8	5	3
3	5	8	12	14	12	8	5	3
3	5	8	12	15	12	8	5	3
3	5	9	12	14	12	9	5	3
3	5	9	13	14	13	9	5	3
3	5	9	13	15	13	9	5	3
3	5	9	13	16	13	9	5	3
3	5	10	13	15	13	10	5	3
3	6	9	13	16	13	9	6	3
3	6	9	14	15	14	9	6	3
3	6	9	14	16	14	9	6	3
3	6	10	13	17	13	10	6	3
3	6	10	14	16	14	10	6	3
3	6	10	14	17	14	10	6	3
3	6	10	15	16	15	10	6	3
3	6	11	14	17	14	11	6	3
3	6	11	14	18	14	11	6	3
3	7	10	15	17	15	10	7	3
4	6	10	15	18	15	10	6	4
4	6	10	16	17	16	10	6	4
4	6	11	15	18	15	11	6	4
4	6	11	15	19	15	11	6	4
4	6	11	16	18	16	11	6	4
4	6	11	16	19	16	11	6	4
4	6	12	16	18	16	12	6	4
4	6	12	16	19	16	12	6	4
4	7	11	16	20	16	11	7	4
4	7	11	17	19	17	11	7	4
4	7	12	16	20	16	12	7	4
4	7	12	17	19	17	12	7	4
4	7	12	17	20	17	12	7	4

법적근거

기재요령
안내

목적 등

인적·학적
사항

출결상황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1학년)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2·3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독서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타
사항 등

참고자료



기재요령

표준 가이드라인

-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함.
- 방과후학교 활동은 기재하지 않음.
- 정규교육과정의 교과 성취기준에 따라 수업 중 연구보고서(소논문) 작성이 가능한 과목*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연구보고서(소논문) 실적(제목, 연구 주제 및 참여인원, 소요시간)을 제외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있음.

* 연구보고서(소논문) 작성 가능 과목: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

[학점제를 적용받지 않는 학년]

- 일반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3학년

▣ 교과학습발달상황

학기	① 교 과	과 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등급	비 고
이수단위 합계							

과 목	②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

<진로 선택 과목>

학기	① 교 과	과 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수)	성취도별 분포비율	비 고
이수단위 합계							

과 목	②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

<체육·예술>

학 기	① 교 과	과 목	단위수	성취도	비 고
이수단위 합계					

과 목	②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

[학점제를 적용받는 학년]

- 일반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1학년·2학년,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전학년 적용

학기	① 교과	과목	학점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등급	비고
이수학점 합계							

과목	②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

<진로 선택 과목>

학기	① 교과	과목	학점수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수)	성취도별 분포비율	비고
이수학점 합계							

과목	②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

<체육·예술>

학기	① 교과	과목	학점수	성취도	비고
이수학점 합계					

과목	②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

① 교과

가. 과목별 성적일람표(학기말)의 합계점수는 100점으로 환산하여 작성한다.

나. 지필평가, 수행평가, 학기 말 평가의 성적처리는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한다.

다. 귀국학생 교과목 및 성적의 기록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유학(미인정유학 포함) 후 귀국한 학생의 유학기간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은 공란으로 둔다.

※ 해당 기간의 기록은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아니므로 학교생활 기록부에 입력하지 않음.

2) 다만, 한국학교에서 취득한 학업성적은 국내 해당 학년의 동일(유사) 과목 학업성적으로 반영하여 처리하되, 동일(유사) 과목 인정 및 결시에 따른 인정점 부여 등의 사항은 전입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한국학교의 성적 산출 방식이 국내학교와 다른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의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교과목 성적을 직접 입력함.

법적근거

기재요령
안내

목적 등

인적·학적
사항

출결상황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1학년)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2·3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독서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타
사항 등

참고자료

라. 전문교과Ⅱ의 실무과목을 운영하는 경우 실무과목의 능력단위 성적은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의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에 입력한다.

마. 능력단위로 구성된 실무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를 구분하여 실시한다.

구분	평가구분	비 고	
실무과목	지필평가	} 학기 말 성적	
능력단위	수행평가 (지필형 수행 가능)		

②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생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입력한다.

※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교과담당교사가 교육정보시스템의 [성적-성적처리-과목별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학기별로 입력할 수 있으며, 동일 과목에 대해 1학기 및 2학기에 내용을 각각 입력하는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에 ‘(1학기)’, ‘(2학기)’와 같이 ‘(학기명)’이 자동으로 입력됨(2학기는 다음 줄에 표기됨).

※ 단, 대입수시 전형자료 생성 시에는 3학년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중 ‘3학년 1학기(조기 졸업생은 2학년 1학기)’ 내용만 생성·제공되고, ‘2학기’ 선택 후 입력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함.

※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과목별로 한 줄씩 띄어 등록됨.

※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참여도·태도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력함.

※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급담당교사가 교육정보시스템의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아래 ‘마’항의 범위를 유의하여 입력함.

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모든 교과(군)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한다.

1) 교과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그 사유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예시〉 순회교육대상학생의 경우: 순회교육으로 특이사항 없음.

〈예시〉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특이사항 없음.

〈예시〉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특이사항 없음.

※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 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 하되 자료 입력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함.

다. 전문교과Ⅱ의 기초과목, 실무과목은 과목별로 입력하되,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능력 단위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입력할 수 있다.

- 입력 서식

※ (학기명) 과목명: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 (단, 능력단위명 기재시 “[능력단위: 능력단위명]”으로 표기)

<예시>

과 목	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학기) 식품품질관리: 식품 제조의 전과정에서 품질관리의 절차와 방법을 이해하고 있음. [능력단위: 입고검사] 입고 시 발주서에 따라 원·부재료의 입고 품목을 확인하고 각 품목별 입고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행함. 특히 샘플 검사 후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 결과를 기록한 후 발표함.	

라.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1등급을 체육 관련 교과외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마.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항 목	내 용
한국학교	한국학교의 성적 산출 방식이 국내학교와 다른 경우
학력인정 대안학교	학력인정 대안학교의 성적 산출 방식이 전입교와 다른 경우
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른 미이수 교과목 보충 학습 과정	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라 공통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온·오프라인의 방법으로 ‘보충 학습 과정’을 실시했는데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영재교육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발명교육	당해 학기에 기술·가정, 과학 교과 모두 개설되지 않은 경우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에 따른 과목 이수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특정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온라인 수업)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을 수강하였으나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성적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산출되지 않은 과목에 한하여 이수내용 기재)

바.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내용 입력 방식

1)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고시 제2019-211호)」,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6170, '19.11.25.)에 따라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관련 내용을 해당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또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 입력여부는 교육적 유의미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판단하고, 관련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및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에 중복기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함.

가)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이 교과와 연계되는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나)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이 특정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법적근거

기재요령
안내

목적 등

인적·학적
사항

출결상황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1학년)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2·3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독서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타
사항 등

참고자료

③ 기타

가. 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온라인수업) 성적처리 및 입력 방식

- 1)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따라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을 전부 또는 일부 받은 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에 준하여 성적을 처리한다.
 - 가) 위탁학생이 위탁교(기관)에서 성적을 취득한 경우, 위탁교(기관)의 성적을 인정하고,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때, 위탁교(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유사) 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한다.
 - 나) 다만, 성적(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등)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문장으로 이수 내용(과목명, 이수기간, 이수시간)만을 입력한다.
 - 다) 전·편입학 및 귀국 등으로 공통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온라인수업으로 ‘보충 학습 과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과목명, 이수기간, 이수시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입력방법은 별표 9의 해설 ‘마목의 7) 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른 미이수 교과목 보충 학습 과정 입력 방식 참조).

나. 영재교육 이수내용 입력 방식

- 1)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서 수료한 영재교육 관련 내용은 관련 교과목의 [성적-성적처리-과목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서 ‘영재·발명교육 기록사항’에만 입력한다(근거법령: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항).
 - ※ 단,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의 ‘영재·발명교육 기록사항’에 입력하되, 체험활동 등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음.
 - ※ 영재학교: 영재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제4호)
 - ※ 영재학급: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학급(「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제5호)
 - ※ 영재교육원: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등에 설치·운영되는 부설기관(「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제6호)
 - ※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 및 영재교육원의 장은 해당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매 학년말에 소속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함(「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기재 방법】

-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이수내용을 입력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기관 명칭은 입력하지 않음.
 〈예시〉 영재교육원에서 1학년 과정 정보 영역(120시간) 110시간을 이수함. / 영재학급에서 1학년 과정 정보 영역(120시간) 120시간을 이수함.
- [성적-성적처리-과목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 또는 [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의 '영재·발명교육 기록사항'에 입력하면 해당 내용이 대입전형자료에서 제외됨.
- 입력된 글자 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글자 수에 산입되지 않음.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영재교육 실적은 제공하지 않음.

다. 발명교육 수료내용 입력 방식

1)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의 교육실적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항에 따라 관련 교과(기술·가정 또는 과학)의 [성적-성적처리-과목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서 '영재·발명교육 기록사항'에만 입력한다.

※ 단,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의 '영재·발명교육 기록사항'에 입력하되, 체험활동 등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음.

※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의 교육실적 자료를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 학년도 말일까지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함(「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 교육 수료증이 발급되는 초급(기초)·중급·고급(심화) 또는 특별과정 등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교육실적 자료를 입력하며(학교 자체 실시 과정 제외), 이 경우 구체적인 센터의 명칭을 입력하지 않음.

〈예시〉 발명교육센터에서 실시한 '발명·특허 기초과정(20시간)'을 수료함. / 발명교육센터에서 실시한 '발명·특허 고급과정(20시간)'을 수료함.

- [성적-성적처리-과목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 또는 [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의 '영재·발명교육 기록사항'에 입력하면 해당 내용이 대입전형자료에서 제외됨.
- 입력된 글자 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글자 수에 산입되지 않음.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발명교육 실적은 제공하지 않음.

라. 학적변동자 성적처리 방식

1)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16호(2001.03.29.)의 적용을 받았던 학생이 재입학 등의 사유로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71호(2005.02.25.) 이후 훈령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양식은 변경하지 않고 해당 학기 성적을 입력하고 '비고'에 해당 사유를 명시하며 학교는 기존 출력물을 함께 보관한다.

법적근거

기재요령
안내

목적 등

인적·학적
사항

출결상황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1학년)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2·3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독서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타
사항 등

참고자료

<예시>

학기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등급	비고
1	수학	공통수학	4	수	1(3)/ 240		재입학
이수단위 합계							

2) 훈령 제243호(2018.3.1.)의 적용을 받았던 학생이 복학 등의 사유로 제477호(2024.3.1.)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보통교과 '과학탐구실험'과 '진로 선택 과목'은 '석차등급'이 있는 양식에 해당 학기의 성적을 입력하고, '비고'에 그 '사유'(진로선택과목은 '사유' 및 '진로 선택')를 명시하며 학교는 기존 출력물을 함께 보관한다.

※ 대입 정보 제공 시 '석차 등급'이 산출된 과목은 '성취도'를 제공하지 않고 '석차등급'을 제공함.

<예시> 2018학년도 신입생이 1학기 종료 후 휴학하였다가 2024학년도 2학기에 복학한 경우

- 1학기 성적은 취득한 성적을 그대로 인정하여 각 교과(군)의 해당 항목에 입력하되, 다음의 사항에 유의함.

※ (과학탐구실험) 성적 산출 방식 변경, (진로선택과목) 성적 산출 방식 및 학생부 양식 변경

- 1) 1학기에 이수한 '과학탐구실험'은 '원점수 / 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급'을 모두 입력하고 '비고'에 그 '사유(복학)'를 명시함.
- 2) 1학기에 이수한 '진로선택과목'은 신설된 '진로선택과목'이 아닌, '석차등급'이 있는 양식에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급'을 입력하고 '비고'에 '사유(복학)' 및 '진로선택'을 명시함.

<예시> 교과학습발달상황 입력

[1학년]

학기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등급	비고
1	
	체육	스포츠 생활	2	98/78(5.2)	A(150)	1	복학, 진로선택
	과학	과학탐구실험	1	98/75(8.5)	A(150)	1	복학
2	과학	과학탐구실험	1	95/73	A(135)		
	
이수단위 합계							

<진로선택과목>

학기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수)	성취도별 분포비율(%)	비고
2	국어	실용국어	4	96/72	A(150)	A(30.2) B(45.3) C(24.5)	
	
이수단위 합계							

마. 소년보호기관 위탁 학생의 재적교 평가 응시 방법

※ 법무부 소속 소년보호기관 중 수업일수는 인정하나 자체 평가 및 성적처리가 불가한 기관에 한함
 ([참고자료 6] 소년보호기관 관련처리 참고).

1) 기관별 역할

구분	소년보호기관	재적교
평가 전	1. 응시 희망자 조사 2. 응시생 재적교 협조 공문 발송 3. 재적교와 평가 운영 방안 협의 4. 시험지 수령	1. 소년보호기관과 평가 운영 방안 협의 2. 시험지 발송
평가 중	〈소년보호기관에서 응시〉 1. 평가장 마련 2. 감독관 배정 3. 평가 실시 후 답안지 수거	〈재적교에서 응시〉 1. 평가장 마련 2. 감독관 배정 3. 평가 실시 후 답안지 수거
평가 후	시험지 수령과 동일한 방안으로 답안지 송부	답안지 수령 후 성적 처리

2) 유의사항

가) 평가 준비: 소년보호기관이 주관하고 재적교가 협조하여 평가 운영 준비

나) 시험지 및 답안지 송부: 소년보호기관과 재적교가 협의하여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

※ 일반우편 및 택배 발송을 금지하고, 업무 담당자 외 대리수령 불가

※ 답안지는 시험지 수령과 동일한 방법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인편으로 수령하였더라도 등기우편으로 송부 가능

다) 평가 감독관 배정: 평가장을 마련한 곳에서 감독관 배정

※ 평가 장소와 관계없이 소년보호기관 담당자는 반드시 감독관으로 배석

라) 학생이 응시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평가기간 동안 출결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바.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전문 교과Ⅲ

1)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전문 교과Ⅲ'는 전문 교과Ⅱ의 성적처리 유형 및 평가 방법 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법적근거

기재요령
안내

목적 등

인적·학적
사항

출결상황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1학년)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2·3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독서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타
사항 등

참고자료



유의사항

-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 입력 불가 항목
 - 각종 공인어학시험(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 교과·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아 참여한 각종 교외대회에서의 수상실적도 기재 불가)
 - 교외 기관·단체(장) 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
 -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원점수, 석차, 석차등급, 백분위 등 성적 관련 내용 일체) 및 관련 교내 수상실적
 -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
 - 도서출간 사실,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출원 또는 등록 사실
 - 교내대회 참여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 이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에서 기재 금지한 사항 일체
 - K-MOOC, MOOC, KOCW
 - 자율탐구활동으로 작성한 연구보고서(소논문) 관련사항 일체는 기재할 수 없으며, 탐구보고서 등으로 편법적 기재 금지
 - ※ 대회와 관련하여, 대회의 명칭을 단순행사로 변경하여 입력하는 행위 불가('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포함하여 '수상경력' 이외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변경 입력 불가)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영재·발명교육 실적은 제공하지 않음.